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2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제220402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3
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 상향(안 제7조의2제1항)	6

I.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제220402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13.

다. 회 부 일 : 2024.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매년 1%p씩 상승하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급여 적용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급자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의 나이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의 청년
나이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
법」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가구원
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에 기여하고, 청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3. 검토의견

가.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u>100분의 43</u>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 ----- ----- ----- ----- -----, ----- ----- <u>100분</u> <u>의 60</u> -----.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¹⁾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이하인 경우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26만 3,035원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를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²⁾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표 1]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자료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시키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어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만 선정기준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틀을 훼손하고 생계급여 등 타 급여³⁾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급여의 지원범위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임.

2)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고용노동부, 2023. 8. 4. 배포 보도자료)

3)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상,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 50%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6조 2,964억원임.

[표 2]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급권자의 범위 (안 제5조제1항)	국비	9,356	10,043	10,552	11,075	11,617	52,644
	지방비	1,834	1,969	2,069	2,171	2,277	10,320
	합계	11,190	12,012	12,621	13,247	13,895	62,964

※자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같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할지 여부는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거수준 향상 정도,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및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 상향(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34세 이하----- ----- ----- ----- -----.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7조의2⁴⁾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지급⁵⁾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청년가구원의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30세 미만인 사람까지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⁶⁾을 참고하여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도 청년가구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4) 「주거급여법」(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5) 법률 개정을 통한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신설 이전인 2020. 8. 10.에 청년가구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여 2021년부터 분리지급을 시작함.

6)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 등 개별 급여체계의 일반법⁷⁾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개별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⁸⁾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인 자는 이미 개별가구로 규정⁹⁾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이상의 사람은 현재 모두 개별가구에 해당하여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함.

2023년 4월 18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여 청년가구원 분리 지급 규정을 신설한 배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개별가구로 인정되지 못했던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적으로 청년가구원 분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¹⁰⁾¹¹⁾.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별도로 법률 개정을 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4

10) 청년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과 개별가구 주거급여의 지급액 기준은 동일함.

11) 별도 주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임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 입법한다는 개정 실익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주거급여법」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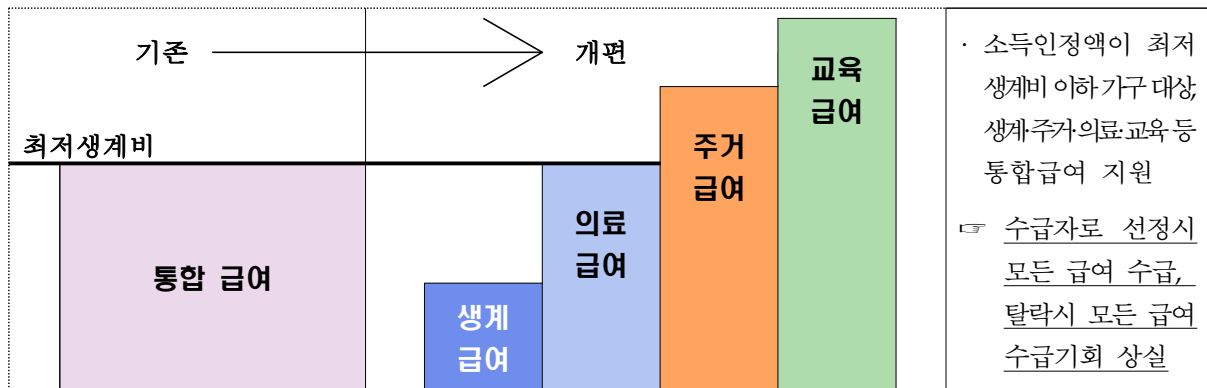
참고1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개요('15.7월~)

□ 맞춤형 급여 개편('15.7~)

- (급여개편 배경)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
 -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주거·의료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



<개편전 주거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임차가구, 자가가구 구별 없이 단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현금지원 → 주거급여 목적이라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명목

- (제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15.7)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준용

참고2

'24년 주거급여 개요

□ 개 요

-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 48% : (1인) 107.0만원 (2인) 176.8 (3인) 226.3 (4인) 275.0만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7.8~64.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원자격(기준 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

<보수범위별 보수한도액 및 수선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장애인은 무장애 관련시설(단차 제거, 문폭 확대) 설치 추가지원(380만원),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50만원)